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다음 표와 같이 신설(3개)함.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스마트공장산업기사(162)	2026. 1. 1.
	스마트공장기능사(162)	2026. 1. 1.
	산림기능장(243)	2026. 1. 1.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바.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05)					서비스 분야(34)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30	116	116	159	10	10	3	1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5)”를 “16 기계(7/77)”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2 기계 장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 정비	궤도장비 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 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표면실장 장비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반도체설비 보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직무 분야(26)란 중 “24 농림어업(4/39)”을 “24 농림어업(4/40)”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중 243 임업(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3 임업 (14)				버섯					
					버섯 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목재가공 펠프중이 제조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무 부장관란 중 공정거래위원회란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령 제 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 중 142 토목(48)의 철도토목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토목기사	필기시험	1. 철도공학 2. 측량학 3. 응용역학 4. 철도보선관계법규
	실기시험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중 242 축산(5)의 축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기능사	필기시험	가축생산기술, 사료생산 및 이용
	실기시험	축산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5)”를 “16 기계(7/77)”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29)”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종전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29)]의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다음에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스마트공장산업기사	필기시험	1. 자동제어 2. 네트워크 일반 3. 스마트공장 시스템
	실기시험	스마트공장 구축 실무

스마트공장기능사	필기시험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실기시험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중 211 정보기술(15)의 정보기기운용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시험	네트워크 구성, 정보기기 유지보수, 정보기기 설치운영
	실기시험	네트워크 운용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4 농림어업(4/39)”를 “24 농림어업(4/40)”으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3 임업(13)”를 “243 임업(14)”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243 임업(14)[종전의 243 임업(13)]의 산림기술사 다음에 산림기능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기능장	필기시험	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산림작업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243 임업(14)[종전의 243 임업(13)]의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기사	필기시험	1. 산림조성 2. 산림경영 3. 사방·산지복구 4. 산림기반시설 5. 산림보호
	실기시험	산림경영실무

산림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산림조성 2. 산림경영 3. 산림토목 4. 산림보호
	실기시험	산림사업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 제1호의 243 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3 임업	산림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	----	----------------------	----------	--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공군의 정보통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학교	광역전송체계정비 부서관 초급	무선설비기능사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부서관 초급	정보처리기능사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공군의 군수 2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2학교	전력설비병	전기기능사
	기계설비병	에너지관리기능사
	공병장비운전병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공병건설부서관초급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9의 243 임업란 중 “산림기능장”을 추가한다.

별지 제17호의 3 서식 중 포상금 수령시 희망 계좌번호란에 예금주란을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 공포일

가. 제36조의 개정규정

나. 별지 제17호의 3 서식의 개정규정

다. 별표 14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업란과 관련된 규정

마.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산림기능장과 관련된 규정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368호의 개정규정 별표 8 및 고용노동부령 제398호의 개정규정 별표 8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 : 2025년 1월 1일
2.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26년 1월 1일

제3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398호의 개정규정 별표 9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고용노동부령 제398호의 개정규정 별표 14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까지 다음 표(별표 14)의 왼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장거리통신정비 부사관 초급	광역전송체계정비 부사관 초급
정보체계관리 부사관 초급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부사관 초급
전력운영병	전력설비병
항공설비병	기계설비병
기지건설장비운전병	공병장비운전병
항공시설 부사관 초급	공병건설 부사관 초급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7호의3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수령 시 희망 계좌번호에 “예금주”는 추가하고 첨부서류에 “통장사본”은 삭제하여 사용한다.

제7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7호의3 서식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정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대여자	성 명	대여자자격증		
		주 소	(전화번호:)		
	사용자	성 명(업체명)	대표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여 알선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대상자의 부정행위(대여, 대여자격증 사용, 대여 알선)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포상금 수령시 희망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사용, 알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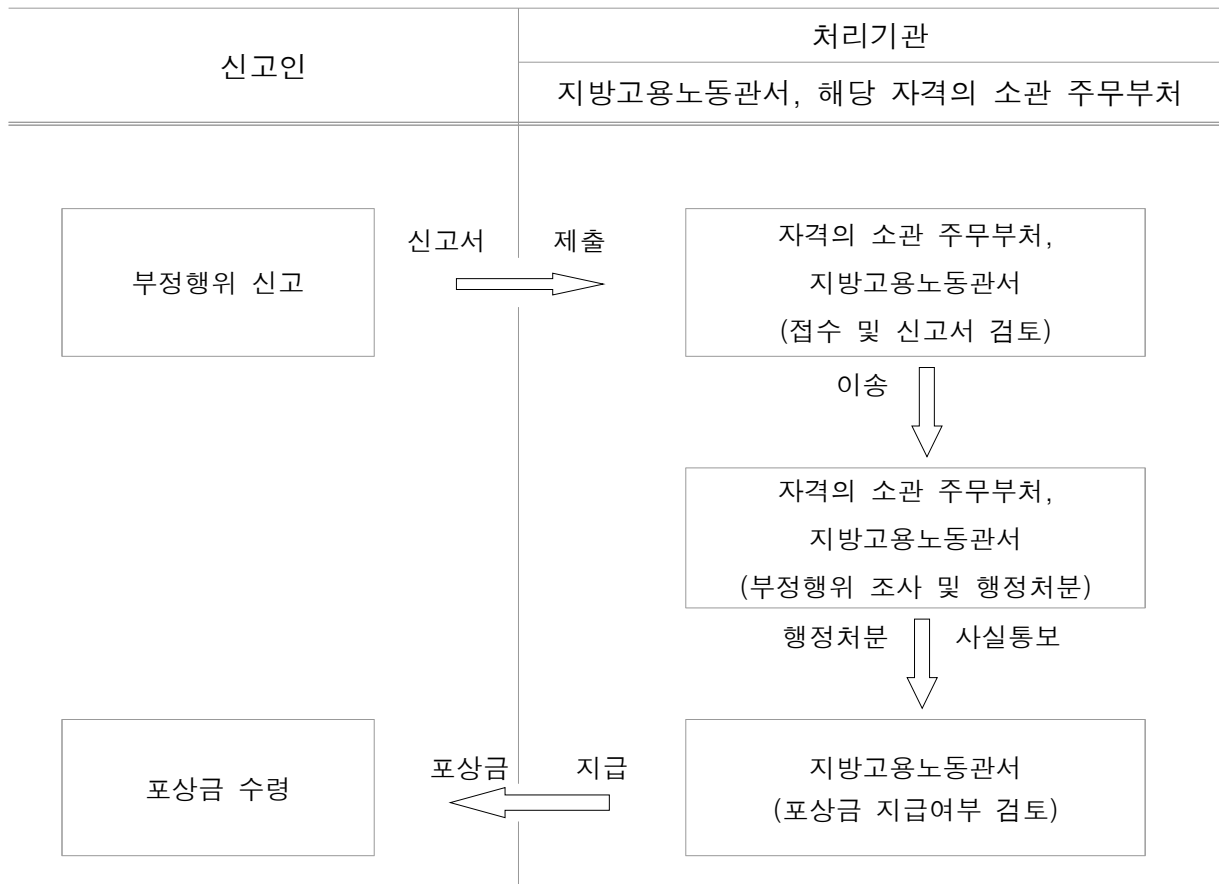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수수료) ①~④ (생략)	제36조(수수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 ----- ----- ----- ---- <u>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u> ----- ----- ----- ----- -----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u>5.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